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93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황운하·조 국·김준형

이해민 · 김재원 · 강경숙

김선민 · 신장식 · 정춘생

서왕진 • 박은정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함)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5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벌금형과 달리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유예기간 중에 있는"을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다음	제4조(임원 등의 자격)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			
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4		
를 선고받고 그 <u>유예기간 중</u>	<u>유예기간이 끝</u>		
<u>에 있는</u> 자	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u> 한</u>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